



도민을 섬기는 열린 의회

제346회 임시회

2016.03.04.

검 토 보 고 서

- 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전문위원

충청북도교육청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윤 홍 창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6년 02월 24일

○ 회부일자: 2016년 02월 24일

3. 제안이유

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급학교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을 실시하고, 교내 교통안전 실태 조사를 통하여 교통 안전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용어 정의(안 제2조)

나. 교육감 등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교내 교통 안전지도 및 교육(안 제4조)

라. 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(안 제5조)

마. 지원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청 관내 각급학교 내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,
- 안 제2조는 ‘각급학교’ 및 ‘교통사고’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,
-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각급학교 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·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였으며,
- 안 제4조는 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을 함에 있어 ‘학교 내 정기적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에는 운행 금지 계도’ 등 5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음.
- 안 제5조는 교육감은 매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,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·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6조는 학생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.
- 본 조례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, 조례 제정을 통하여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각급학교 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관계 법령 발췌

□ 교육기본법[법률 제13003호, 2015.1.20., 일부개정]

제17조의5(안전사고 예방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□ 유아교육법[법률 제13226호, 2015.3.27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2. “유치원”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·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.

□ 초·중등교육법[법률 제12933호, 2014.12.30., 일부개정]

제2조(학교의 종류) 초·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
1. 초등학교·공민학교
2.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
3.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
4. 특수학교
5. 각종학교

□ 교통사고처리 특례법[법률 제10790호, 2011.6.8. 타법개정]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2. “교통사고”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(死傷)하거나 물건을 손괴(損壞)하는 것을 말한다.